# 농산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요건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 연무와 2014년 국경을 넘는 연무오염법

싱가포르에서 농산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은 연무(haze)를 계기로 공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서 농장 개간을 위해 놓은 불은 특히 1997년, 2013년, 2015년에 거듭 싱가포르를 연기로 뒤덮었습니다. 2015년 환경부 장관은 싱가포르의 손실을 7억 싱가포르달러로 추산했습니다.[1]

의회는 2014년 국경을 넘는 연무오염법(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8월 5일 의회를 통과하여 2014년 9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례적으로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안팎의 주체가 싱가포르의 연무오염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경영상 통제하에 있는 자의 소각을 묵인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을 겨냥합니다.[2] 이 법의 민사 및 형사 조항은 연무가 발생한 날마다 누적되는 벌금을 법정 상한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3]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그러나 집행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거가 인도네시아에 있고,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법을 자국 관할권에 대한 침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2015년 연무 이후 국가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은 인도네시아 기업 6곳에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2017년 3월까지 그중 2곳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으나, Asia Pulp & Paper의 공급업체가 관련된 4건은 2021년 9월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4] 시장의 제재는 더 빨랐습니다. 싱가포르 환경위원회(Singapore Environment Council)는 Asia Pulp & Paper의 그린 라벨(Green Label) 사용을 일시 정지했고, 이후 슈퍼마켓 체인 NTUC FairPrice는 이 그룹의 제품을 진열대에서 철수시켰습니다. 그룹이 화재 관리에 투자하고 강화된 인증을 취득한 뒤에야 제품이 다시 진열되었습니다.[5] 이 사례는 트레이딩 허브의 국내 시장에서 가해지는 평판 압력이 역외 적용 형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 민간 표준: RSPO와 산림전용 금지 서약

업계의 첫 번째 대응은 민간 규제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원탁회의(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는 2004년 생산자, 트레이더, 제조업체, 소매업체 및 비정부기구로 구성된 협회로 설립되었으며, 취리히에 본부를, 쿠알라룸푸르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RSPO는 여러 차례 개정해 온 원칙과 기준에 따라 농장과 공급망을 인증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인증 지역에서 산림전용이 계속되고 있고 집행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RSPO를 비판합니다.[6]

두 번째 대응은 기업들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2013년 12월 5일 Wilmar는 자사 사업과 제3자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산림전용 금지, 이탄지 개발 금지, 착취 금지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 서약은 비정부기구들의 캠페인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중 한 단체는 나중에 Wilmar를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더러운 팜유 트레이더라고 불렀습니다.[7] 다른 트레이더들도 비슷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의의는 책임이 공급업체로까지 확대된다는 데 있습니다. 수천 곳의 착유공장에서 매입하는 트레이더는 그 공장들의 열매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하며, 이로써 추적 가능성은 트레이딩 하우스의 핵심 기능이 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Golden Agri-Resources는 이러한 정책 뒤에 있는 상업적 압력을 잘 보여 줍니다. 2010년경 Unilever와 Nestlé를 비롯한 여러 주요 구매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관행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벌어진 후 이 회사의 자회사들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8] 싱가포르에 상장된 생산자는 유럽과 북미 소비자 시장에 대한 접근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생산국의 법이 무엇을 규정하든 그 시장들의 요건이 실무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 EU 산림전용 규정

유럽연합은 이러한 민간 서약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산림전용 없는 제품에 관한 규정(EU) 2023/1115(Regulation (EU) 2023/1115)는 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대두 및 목재와 이로부터 파생된 일정한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되었고, 생산국의 법을 준수하며, 실사 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가 제출된 경우에만 이를 EU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9]

이 규정의 적용은 두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개정으로 1년 연기되었고, 2025년 12월 19일의 두 번째 개정으로 실사 요건이 수정되면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영세기업과 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4일 간소화 검토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10]

이 규정은 생산국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2025년 5월 22일의 이행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표준 위험 등급에, 싱가포르는 저위험 등급에 속합니다.[11] 이 규정은 원자재가 생산된 국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싱가포르의 저위험 분류는 실무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산 팜유나 말레이시아산 고무를 유럽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싱가포르의 트레이더는 고객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지리적 위치 데이터와 위험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 규정이 자국 팜유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소농들을 차별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12] 이 분쟁으로 싱가포르 기반 그룹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생산국과 자신들이 공급하는 소비 시장 사이에서 미묘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제I편 제IV장에서 두 이웃 나라와의 정치적 관계를 살펴봅니다.

## 트레이딩 기능으로서의 추적 가능성

연무 관련 입법, 민간 표준, 그리고 EU 규정이 누적적으로 작용한 결과 농산물 트레이딩 하우스는 변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제 농장에 대한 위성 모니터링, 공급 착유공장의 지도화, 고충처리 절차 및 감사 시스템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트레이더와 물류 전문가 외에도 데이터 전문가, 변호사, 지속가능성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변화의 혜택을 봅니다. 이 기능들은 지역 본부에 집중되며, 동남아시아의 지역 본부는 대개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도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팜유 거래에 금융을 제공하는 대출기관은 자체 지속가능성 정책을 적용하고, 차입자에게 산림전용 금지 서약의 준수를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제K편 제II장에서 설명하듯이,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은행이 신용위험 관리의 일부로 환경 위험을 관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은 시장 접근의 조건일 뿐 아니라 금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 주

1. Wikipedia,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97년, 2013년 및 2015년의 연무 사태; 환경부 장관은 2015년 손실을 7억 싱가포르달러로 추산함; 국가환경청은 자사 토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기업 6곳에 법적 통지서를 발송함. ↩
2. Wikipedia,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위 주 참조): 2014년 8월 5일 제정, 2014년 9월 10일 재가, 2014년 9월 25일 시행. Wikipedia,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위 주 참조): 이 법은 싱가포르에 영향을 미치는 연무에 기여하는 "firms or entities in or outside Singapore"를 대상으로 하며, 경영상 통제하에 있는 자의 오염을 묵인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을 겨냥함. ↩

3.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sections 5 및 6 (범죄 및 민사책임), 연무오염 1일당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 총액 최대 2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

4. Wikipedia,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위 주 참조): PT Bumi Sriwijaya Sentosa 및 PT Wachyuni Mandira에 대한 조사는 2017년 3월까지 종결됨; 2021년 9월 현재 4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 4개 회사는 Asia Pulp and Paper의 공급업체임. ↩

5. Wikipedia, "Asia Pulp & Paper"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NEA는 APP를 2015년 연무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5개 기업 중 하나로 지목함; 싱가포르 환경위원회는 "instituted a temporary restriction on the use of Singapore Green label certifications"; NTUC FairPrice는 APP 제품을 철수시킴; APP는 화재 관리에 1억 미국달러를 투자했고 이후 싱가포르 매장 진열대에 복귀함. ↩

6. Wikipedia,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04년 설립; 본부는 취리히; 사무국은 쿠알라룸푸르에 있으며 자카르타에 위성 사무소를 둠. Wikipedia,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위 주 참조), 인증 지역에서도 산림과 이탄지로의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환경 NGO들의 비판, 노동권 단체들의 비판 및 Rainforest Action Network의 비판을 소개함. ↩

7. Wikipedia, "Wilmar International"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On 5 December 2013, Wilmar committed to a No Deforestation, No Peat & No Exploitation Policy", 자사 사업과 제3자 공급업체에 적용됨. Wikipedia, "Wilmar International" (위 주 참조): 2018년 Greenpeace 보고서는 Wilmar를 "the biggest and dirtiest palm oil trader in the world"로 묘사함; 2013년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WWF 보고서는 이 회사를 테소닐로 국립공원(Tesso Nilo National Park)에서 불법 재배된 야자열매와 연관지음. ↩

8. Wikipedia, “Golden Agri-Resources”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10년경 Burger King, Unilever 및 Nestlé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 관행을 이유로 GAR 자회사들과의 공급계약을 해지함. ↩

9.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environment.ec.europa.eu,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대상 원자재는 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대두 및 목재; 제품은 “deforested after 31 December 2020”된 토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서는 안 됨; 주된 법령은 Regulation (EU) 2023/1115. ↩

10.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위 주 참조): 2024년 12월 첫 번째 개정으로 적용 연기; 2025년 12월 19일 두 번째 개정으로 적용 연기 및 실사 요건 수정;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자와 트레이더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영세기업 및 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 2026년 5월 4일 간소화 검토 보고서 공표. ↩

11. European Commission, EUDR 국가 분류 목록 (green-forum.ec.europa.eu,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standard risk category”, 싱가포르는 “low risk category”; 고위험: 벨라루스, 북한, 미얀마 및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위 주 참조): 이행법은 2025년 5월 22일 채택됨. ↩

12. EUDR에 대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공동 이의 제기, 특히 팜유생산국협의회(Council of Palm Oil Producing Countries)를 통한 2023년 브뤼셀 공동 방문에 관해서는 두 정부의 2023년 성명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